환경기술인 교육자료집(上半期)

2020. 6.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목 차

Ⅰ. 최근 법령 제·개정 사항 1

Ⅱ. 분야별 환경관리 요령

1. 대기 8

2. 수질 14

3. 폐기물 20

Ⅲ. 주요 위반사례

1. 대기 24

2. 수질 38

3. 폐기물 46

Ⅰ 최근 법령 제 · 개정 사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 지정(2020.4.3. 시행)

○ 전라북도(전주, 익산, 군산)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대기관리권역법 제정 '19.4.2, 시행 ´20.4.3.)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법 제15~22조)

- (총량관리사업장 허가/신고) 신규 사업장은 사유 발생 시, 기존 사업장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20.7.2.) 변경허가/신고 필요
  · 다만, 연간 배출량(NOx 4톤, SOx 4톤, 먼지 0.2톤) 미만의 사업장이 배출량 이상이 되게 된 경우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
- (TMS 의무 부착) 총량관리사업장은 모든 배출구에 TMS를 부착하여야 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 자가측정 불법행위 처분 강화[2020.5.27. 시행]

○ 대기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시 측정값 누락 등 부당행위 금지(신설) 및 측정값 조작에 따른 처분 상향(과태료→벌칙)(법 제90조)

<table>
<tr><th rowspan="2">법 조항</th><th colspan="2">위반시 처분</th></tr>
<tr><th>기존</th><th>개정</th></tr>
<tr><td>[제39조(자가측정) 제1항]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td><td>제94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d rowspan="2">제9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
<tr><td>[동조 제2항]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td><td><신 설></td></tr>
</table>

▷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2020.5.27. 시행]

○ 대기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법 제35조 4항)

*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2020.1.1. 시행]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초과부과금(배출허용기준 초과시)과 기본부과금(배출허용기준 이내)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 추가(시행령 별표 4~8)

* 질소산화물 1㎏당 부과단가는 2,130원

○ 부과가 시작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

년도별	단계적 기준	부과단가 (1kg당)
2020년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1,490
2021년	50% 이상인 경우	1,810
2022년	30% 이상인 경우	2,130

▷ 대기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2020.5.27. 시행]

○ 대기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15 제2호아목)

-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기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

· 대기배출사업장(4-5종 포함)이 자가측정 결과를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시스템, SEMS)에 입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의무는 없으며, 측정결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달까지 입력해야 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2020.1.1. 시행]

○ 먼지 등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과 크롬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시행규칙 별표 8)

○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 아크로니트릴(3), 1.2-디클로메탄(12), 클로로포름(5),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 벤조(a)피렌(0.05), 스틸렌(23), 에틸벤젠(23), 사염화탄소(3)(단위 : ppm)

○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설에 석유·화학물질 저장시설, 세정시설, 건조시설 추가

▷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강화[2020.1.1. 시행]

○ VOCs 배출 저감을 위해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주요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0의2)

○ 석유제품 등 저장시설에 대한 상시 누출 확인 제도 시행
* 외부부상형저장시설의 누출원 상시 모니터링(누출농도 월 1회 측정 등)

○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지판(Tag) 부착, 누출기준농도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 확대[2020. 1. 1. 시행]

○ 흡수식 냉난방기 : 열량 1,238,00Kcal/hr[증발량 2톤이상](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기존시설 적용시기)
- 2005년 이전 설치된 시설 : 2020.12.31.까지
- 2005년 ~ 2010년 설치된 시설 : 2021.12.31.까지
- 2011년 이후 설치된 시설 : 2022.12.31.까지

○ 유기질비료제조시설 : 화학비료 및 질소산화물 제조시설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포함
○ 도서발전시설 설비용량 1.5MW 이상
○ 숯가마 전통식 숯가마 규모 $150m^3 \rightarrow 100m^3$

▷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도장공사 추가[2021.1.1. 시행]

(현행) 신축 건물 도장공사는 건축물 축조공사에 포함되어 관리 중
기존 건물(아파트) 도장공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 나목,다목)
(개선)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추가
→ 신고, 종전 분사 방식을 롤러방식 등으로 개선

[물환경보전법]

▷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도입[2019.10.17. 시행]

○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http//www.mu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함(법 제66조의2,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의 종류, 단위, 수량, 처리단가 및 처리 금액을 입력하여야 함
- 폐수위탁사업자 : 폐수 위탁하기 전 폐수 인계내용 입력
* 폐수정보를 모를 경우 폐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입력 가능(4일 이내)
- 폐수처리업자 :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 입력

▷ 폐수배출시설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및 횟수 변경[2020.11.27. 시행]

○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하고,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법 제43조, 제66조)
* (현행)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폐수처리업자 2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 대체 불가
* (현행) 과징금 대체 제한기간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2020.1.1.(신규), 2022.1.1.(기존)]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시행규칙 별표13)

- COD는 산화율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유기물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TOC 적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 기준을 설정, 폐수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측정기기 종류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 초과배출부과금(450원/kg)

＊ 적용시기는 신규 시설의 경우 2020.1.1.부터 기존 시설은 2022.1.1. 부터 적용

<폐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총유기탄소량)>

(단위 mg/L)

구 분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1일 폐수배출량 2천㎥이상	25이하	40이하	50이하	25이하
1일 폐수배출량 2천㎥미만	30이하	50이하	75이하	25이하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위탁폐기물 처리확인 의무화[2019.11.26. 시행]

○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하여 위탁 時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위탁 後 위탁한 폐기물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법 제1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17조, 별표5의7 관련

▷ 과징금[2019.11.26. 시행]

○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여 취득한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의5)

○ (부과금액)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불법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

* 불법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

○ (행정절차)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행정절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준용

▷ 벌칙 기준 강화[2020.5.27. 시행]

○ 불법폐기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종전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법 제64조~제68조)

벌칙 수준	불법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 폐기물 처리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처분 기준 정비[2020. 5. 27. 시행]

○ (허가취소)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에 고의 또는 과실(중과실)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4차 위반시)

○ (영업정지)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

※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경고(1차 위반시), 영업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Ⅱ 분야별 환경관리 요령

[①대 기]

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

○ 허가(신고)내역과 실제 현재시설과 일치(누락 등) 여부 확인

- 현장에 운영중인 시설이 허가(신고)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계통도상의 공정, 용량이 누락되어 있는지

☞ 무허가(미신고) 및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처벌

- 교부된 허가(신고)상의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방지시설내역, 오염물질 발생량 첨부 여부 필히 확인(따로 붙임으로 되어 있으나 미 첨부된 경우 많음)

☞ 미 첨부되어 있을 경우 허가기관 요구 후 허가내역과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설치허가 대상(시행령 제11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배출시설(시행규칙[별표 8의2] 적용기준 농도 이상)
  기타 기준농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3개)*은 검출유무(기준농도 0.00으로 함)
  * 석면/벤지딘/프로필렌옥사이드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제외

○ 변경허가

- 설치허가 받은 배출시설 규모(배출구별로 산정)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50 이상 증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
-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 위반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변경신고(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오염물질 배출과 관계없거나 종전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은 제외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에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 변경

☞ 위반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경고)

❑ 배출시설 설치신고

○ 설치신고 대상

- 배출시설 허가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변경신고(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 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오염물질 배출과 관계없거나 전보다 황 함유량 낮은 연료로 변경은 제외

- 특정물질 발생 우려 시 대기 분석 실시

  ☞ 신고사업장에서 특정대기물질 검출 시 무허가로 적발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상의 신고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 변경

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 행위

○ 방지시설 처리방법(공정) 변경, 시설 증설(폐쇄)시 사전 신고(사후가 아님)

○ 방지시설은 허가(신고)된 각 배출구별 연결된 배출시설을 가동 시 적정 가동하여야 함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치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화재, 폭발 등 예방시설로 인정 제외)
-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훼손방치
- 배출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보존(법 제31조)

-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법 제31조 제2항, 시행규칙 제36조)
- 1종, 2종, 3종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으로 기록보존
- 4종, 5종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별지 7호 서식]에 의거 작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 내용, 시설 관리 및 운영자,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으로 기록 가능)

☞ 위반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경고)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에 의거 휴무일도 작성

❑ 측정기기의 부착 등(법 제32조)

❍ 방지시설의 범위 : 시행규칙 [별표4]

- 방지시설에는 후드(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
  덕트(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
  방지시설에 달린 기계, 기구류(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펌프 등, 예비용도 포함) 등을 포함함

* 모든 동력을 사용하는 방지시설에는 <u>적산전력계를 부착</u>하여야 함

☞ 미 부착 시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적산전력계 부착대상시설(시행령 별표 2)

- 배출시설에 법 제26조를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은 제외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측정 대상 항목)
  -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 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 원료,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으로 항상 가동하는 방지시설

❍ 적산전력계 부착 방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 방지시설 운영 시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다만,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산할 수 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 1~3종 사업장 중 시행령 별표3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 자가측정(법 제39조)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해야 한다
-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 자가측정 대상별 측정 주기

사업장 배출구 규 모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 않는 사업장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측정항목
		후단만 측정	전·후단을 같이 측정	
제1종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 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 환경기술인(법 제40조)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시행령 제39조)
-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시행규칙 제56조)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 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 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초과부과금(법 제35조)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초과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 관련법령
  -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 초과부과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제2호
  - 개선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 초과부과금 대상항목
  - 일반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 특정대기유해물질 :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다. 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비산먼지의 억제조치

- 사업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실시
-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필요하거나 미흡한 경우,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 가능
-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을 중지 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 가능

❑ 비산먼지의 발생사업(시행규칙 [별표13])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벌칙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례	벌 칙
제23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무허가(변경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6조 방지시설 설치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30조 가동개시 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조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공기 조절장치 및 가지배출관 설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미보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 미부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기기 미작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기기 고의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작으로 인한 측정결과 누락 및 거짓측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자가측정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거짓작성, 미보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2020. 5. 27. 시행)

[②수 질]

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물환경보전법 제33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

❍ 허가(신고)내역과 실제 현재시설과 일치(누락 등) 여부 확인

- 현장에 운영중인 시설이 허가(신고)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계통도상의 공정, 용량이 누락되어 있는지

☞ 무허가(미신고) 및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처벌

- 교부된 허가(신고)상의 폐수 배출공정흐름도,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폐수처리계통도 첨부여부 필히 확인(따로 붙임으로 되어 있으나 미 첨부된 경우 많음)

☞ 미 첨부되어 있을 경우 허가기관 요구 후 허가내역과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설치허가 대상(시행령 제31조 제1항)

- 특정수질유해물질(33종)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배출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 설치 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설치신고한 배출시설에서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발생되는 배출시설

❍ 변경허가 대상(시행령 제31조 제3항)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가

-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생 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로서 고체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

❍ 변경신고 대상(시행령 제31조 제4항)

- 공동방지시설 대표자나 종말처리시설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 배출시설 설치신고

❍ 설치신고 대상(시행령 제31조 제2항)

- 허가대상 외 배출시설
- 허가대상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
- 허가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 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 특정물질 발생 우려 시 수질 분석 실시

☞ 신고사업장에서 특정수질물질 검출 시 무허가로 적발

❍ 변경신고 대상(시행령 제38조 제1,2항)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변경허가 제외)
-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 제외)
- 폐수배출시설에서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이 설치 면제된 폐수 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 제한 규정에 미저축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변경허가 대상 중 공동방지시설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허가증(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 1일 최대 폐수량 0.01㎥ (10L)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연료(용수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별표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함
  ※ 다만, 원료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있을 경우에는 그 용수에 있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 출판, 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 1일 최대 폐수량과 무관하게 배출시설에 포함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 : 1일 최대 폐수량 0.1㎥)이상

○ 배출시설 제외

- 1일 폐수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 산정방법

-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 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
- 1일 폐수량 산정 시 절삭유 등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 또는 시설에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더 이상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제외)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배출공정만 있는 경우
  : 재이용(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 또는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ex) 수용성 절삭유 배출공정 등

○ 공정 외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희석금지 규정 적용가이드라인, '16.3.30. 환경부]

- 보일러 응축수, 간접냉각수 등 공정외 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 포함(오염된 물)하여 배출하는 경우 : 공정 중 하나의 시설로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토록 허가(신고)
  * 해당시설의 오염물질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 : 방지시설 설치 면제
  * 인허가 시 배출시설 외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허가증에 배출시설명,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항목, 폐수처리방법 등 기재(인허가 기관 조치사항)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물환경보전법 제38조)

❑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법 제38조 제1항)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

❍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

※ 다만,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 측정기기의 부착 등(법 제38조의2)

❍ 폐수배출 사업장은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 재이용 등 실질적으로 폐수가 미배출되는 경우에는 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면제
-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부착면제

※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제1~4종 사업장은 적산유량계 부착

-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구분 부착
-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 부착

☞ 위반 시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확인방법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처리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① 나지역 적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항목 + (BOD, COD, SS)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미처리 항목 : 해당 지역기준 적용

(2) 특례 적용 사업장

①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처리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②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장

- 농공단지 조성 시 부터 현재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었을 경우 : 특례
- 농공단지 조성 시 또는 현재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 · 유입사업장 : 특례 / 비 유입사업장 : 해당지역 기준 적용

❑ 초과배출부과금(법 제41조)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 관련법령
  - 배출허용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 초과배출부과금 :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개선명령 : 물환경보전법 제39조
- 초과배출부과금 대상항목(19개, 시행령 제46조)
  -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PCB),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질소, 총인

❑ 운영기록부의 기록과 보존(법 제38조 제3항)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 운영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

○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 운영에 중요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폐수무방류시설은 3년간 보존)

- 별지 18호서식(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자)
- 별지 19호서식(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한 사업자)
- 별지 20호서식(위탁처리 및 재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1호(폐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 2호(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 시간대)
- 3호(용수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 4호(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량, 함수율)은 필수 작성 사항

○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물리화학, 생물학적 등)

-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은 <u>가동시간만</u> 작성
-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u>24시간</u>으로 작성하여야 함

○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

-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등 사용량 및 폐수 발생량·배출량 등도 <u>유량계를 반드시 확인</u>하고 <u>전일지침, 금일지침, 사용량, 배출량 등을 작성</u>하여야 함
- <u>소모(증발)량, 재사용량 등도 반드시 작성</u>하여야 함

≪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 벌칙 ≫

물환경보전법	위반사례	벌 칙
제33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무허가(변경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5조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 가동개시 신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폐수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 희석배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미보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 미부착(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제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미부착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의3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고의로 측정기기 미작동, 정상 측정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작으로 인한 측정결과 누락 및 거짓측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지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폐기물]

❑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등에 관한 사항

- 배출자신고 여부(배출자 신고서 확인)

  신고대상 : 배출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장 1일 100kg이 배출 시 등

  • 혼합보관 금지(성상별 분리보관 원칙)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원에 누락 폐기물 확인

  신고대상 : 오니 월 500kg, 폐촉매, 소각재, 폐유 및 폐유기용제 각 50kg 또는 월 합계 130kg이상, 기타 1일 평균 300kg 등

-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 여부

  • 제조공정도, 사용원료, 폐기물 분석결과서 등으로 확인

-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처리 계획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 관리대장 적정 작성 여부

  • 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 여부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 여부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 여부

❑ 폐기물처리 증명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 여부

  • 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 시설에 한함

-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등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자는 제때 입력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

❑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 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

  • 지정폐기물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 여부

  •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관계 서류확인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 기재 여부 등

❑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 및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안전관련 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 이행 여부

❑ 폐기물의 보관관리 상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의 준수여부"

① 보관용기 :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함

② 보관장소 :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함

-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폐기물 : 유출방지벽 설치(신설)

③ 보관방법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 시 처벌)
-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

④ 보관기간 준수

- 사업장 일반폐기물 :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양이 5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지정폐기물 : 45일(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PCB, 유기성폐수처리오니)

  60일(그 밖의 지정폐기물)

  * 다만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인 경우 : 1년간 보관 가능

☞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66조 제1호)

❑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 운반차량증 발급 또는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여부, 운반 방법의 적정성 등 확인

❑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 여부
  - 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
-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 여부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실시 여부

❑ 인계서 작성

○ 전자인계서 작성

- (배출자) 운반자에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위탁량 및 확정 여부 미입력) 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 확정입력
- (운반자)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 (처리자) 인수한 날로부터 2일이내 입력, 처리후 2일 이내에 입력

☞ 전자인계서 미입력 및 허위 입력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66조 제4의4호)

☞ 기간 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장작성 및 실적보고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일자 등 입력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가능)

☞ 미 작성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8조 제3항 제7호)

○ 실적보고

- 매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에 대한 보고를 다음해 2월말까지 하여야 함 (예 : 2020년도 폐기물에 대한 실적보고는 2021년 2월 말일까지)

☞ 실적보고 미 이행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정)(법 제68조 제2항 제9의2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일반)(법 제68조 제3항 제8호)

≪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벌칙 ≫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	벌 칙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사업장폐기물의 무단투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 또는 소각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위·수탁기준 및 처리과정 주기적 확인의무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미이행, 변경확인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수·인계내역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또는 거짓입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업, 처분업, 재활용업)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대여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보관시설(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외 보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의 보관허용량 및 기간 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검사	미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모미만(25kg/hr)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미이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 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령강화(’20. 5. 27. 시행), ** 법령신설(’20. 5. 27. 시행)

Ⅲ 주요 위반사례

[①대 기]

위반사례 1

위반사항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벌 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배출시설 사용중지(입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를 해야 함 - ○○○○는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 ○○○○년 ○○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표백시설(1㎥×1기, 0.5㎥×4기, 0.25㎥×3기, 0.1㎥×2기) 총 10기를 설치하여 가동하면서 관할관청에 설치신고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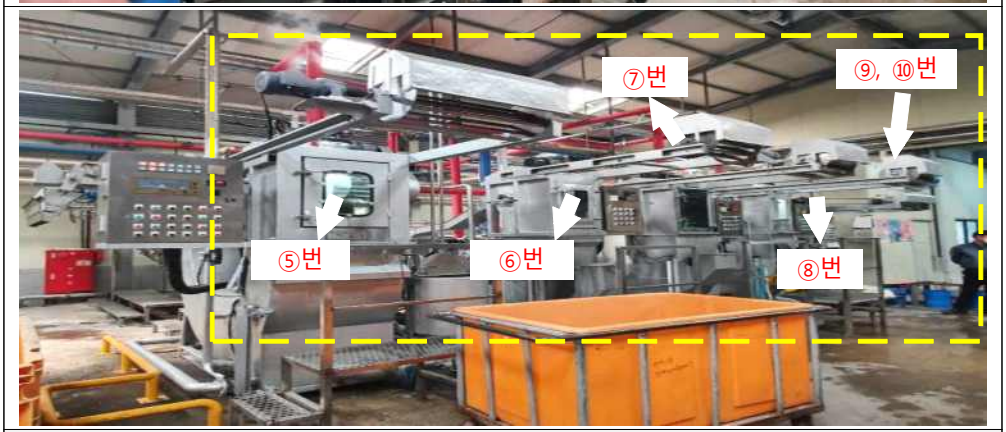 표백시설(1㎥×1기, 0.5㎥×4기, 0.25㎥×3기, 0.1㎥×2기) 총 10기 전경

위반사례 2

위반사항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②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벌 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배출시설 사용중지(입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를 해야 함 - ○○○○는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로, - ○○○○년 ○○월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총 4기(27.7㎥×4기)을 미신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40㎥/분×1기)에 임의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설치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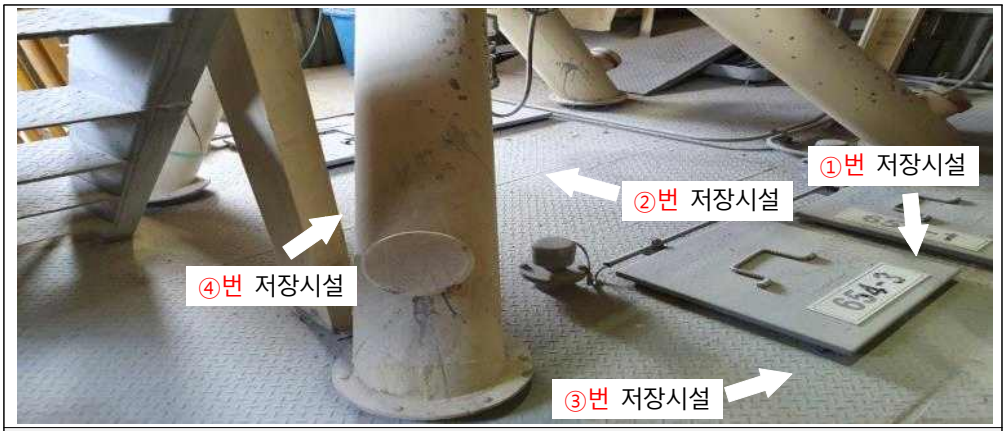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27.7㎥×4기) 전경 여과집진시설(40㎥/분×1기) 전경 미신고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는 입자상 물질

위반사례 3

위반사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신규물질 ※ 허가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일산화탄소) 검출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1호의2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대기배출시설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에서(1,100㎥x1기)에서 휴대용가스분석기(Testo 350K)로 측정한 결과 신고하지 않은 신규물질(일산화탄소)가 검출 됨
관련사진	휴대용가스분석기 측정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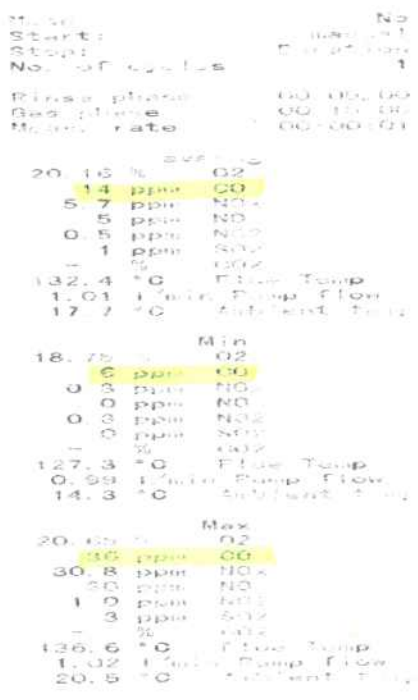 새로운 오염물질(CO) 검출

위반사례 4

위반사항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벌 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는 전분 및 당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 ○○○○년 ○○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여과시설(98㎥×9기)을 가동하면서 이때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 600㎥/분)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흡수에 의한 시설(600㎥/분×1기) 전경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기 위한 송풍기 부분이 분리된 장면 송풍기 모터의 벨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장면 방지시설 전원이 꺼져 있어 전류계가 움직이지 않는 장면

위반사례 5

위반사항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②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벌 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는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 ○○○○년 ○○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유기화합저장시설(1.4다이옥산, 9㎥×1기)을 가동하면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 45㎥/분)에 유입시켜야 하나, 오염물질 유입덕트에 임의로 밸브를 설치 후 이를 닫아 방지시설에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유기화합물 저장시설(9㎥×1기) 전경 배관(덕트)에 임의로 밸브를 설치 후 닫아 놓은 장면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1,4-다이옥산이 보관중인 장면

위반사례 6

위반사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공기희석)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벌 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는 강관을 제조하는 업체로, - ○○○○년 ○○월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산·알카리처리시설(23.7㎥×1기)을 가동하면서 덕트(배관 약 15m)를 임의로 설치하고 동 덕트에 구멍 4개(구경 약 50mm)를 임의로 만들어 이곳으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유입시킨 사실을 확인함(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관련사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산·알카리처리시설 (23.7㎥×1기)을 가동 중인 장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700㎥/분×1기) 전경 임의로 설치한 덕트에 공기를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한 구멍 4개소(구경 약 50mm)

위반사례 7

위반사항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 가지배출관 설치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벌 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는 주정을 제조하는 업체로, - ○○○○년 ○○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 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배출구 직경 약 600mm)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전체 전경 가지배출관 설치 세부내역

위반사례 8

위반사항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 부식·마모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 제1호
벌 칙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면 안됨 - ○○○○는 동물성유지 제조업체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응축시설(6.8㎥×1기)에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300㎥/분×1기)의 덕트 및 흡수액 순환펌프의 패킹 및 드레인 밸브 플랜지 패킹이 부식(마모)되어 오염물질이 새어나오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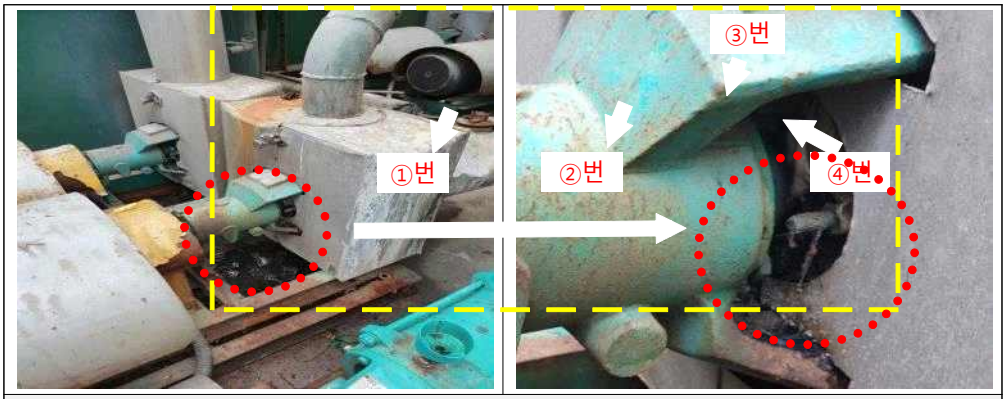 순환펌프의 패킹이 부식(마모)되어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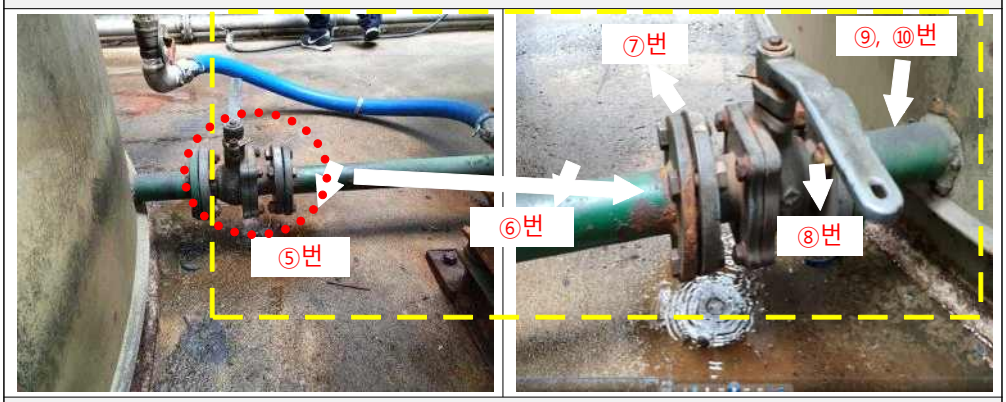 드레인 밸브의 플랜지 부분 패킹이 부식(마모)되어 오염물질이 새어나오는 장면

위반사례 9

위반사항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 고장·훼손 방치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 제1호
벌 칙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하면 안됨 - ○○○○는 전분 및 당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정제시설(3.8㎥×1기)에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730㎥/분×1기)의 덕트(배관)가 훼손(부식·마모)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대기오염방지설인 정제시설(3.8㎥×1기) 전경

위반사례 10

위반사항	자가측정 미이행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3호
벌 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에서 고발**(형사처벌)**로 강화**('20.5.27. 시행)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배출시설의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함 - ○○○○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체로, -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대기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참고사항	□ **자가측정**(법 제39조) - 오염물질을 미측정 또는 측정 결과를 거짓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벌칙 :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 또는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 벌칙 :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에서 고발**(형사처벌)**로 강화**('20.5.27. 시행)

위반사례 11

위반사항	환경기술인 미선임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제1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 제2호
과 태 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0만원)
행정처분	선임명령(1차)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신고자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함 - ○○○○는 동물용 사료 제조업체로, - 이전 환경기술인의 ○○○○년 ○○월경 퇴사 이후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참고사항	□ **환경기술인의 임명기간**(시행령 제39조)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을 변경할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이내의 범위에서 4,5종 사업장 기술인 임명 가능

위반사례 12

위반사항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항
과태료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8호
과 태 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함 - ○○○○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 환경기술인 ○○○은 ○○○○년 ○○월 ○○일에 교육을 받은 이후 점검일 현재까지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참고사항	□ **환경기술인 교육**(시행규칙 제125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위반사례 13

위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호의2
벌 칙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는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 콘크리트 타일 및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년 공장가동 이후 점검일 현재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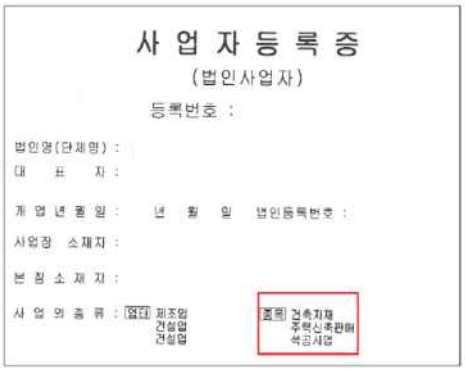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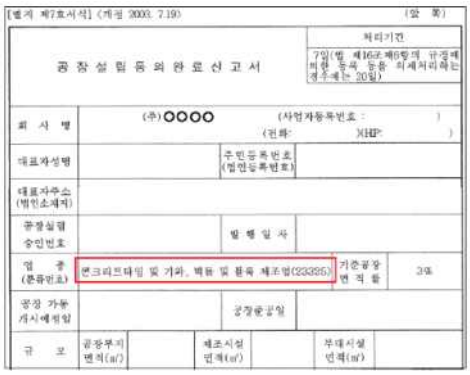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참고사항	※ 시행규칙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

위반사례 14

위반사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벌 칙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조치이행명령(1차)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한 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는 토사석 채취의 광업을 하는 업체로, - 분체상물질인 모래 약 12,000㎥를 사업장 부지내에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방진덮개 미설치 및 방진벽 미설치 및 세륜 시설의 모터 고장으로 인해 측면살수 등이 안되고 있음을 확인함
관련사진	 방진덮개 미설치 및 방진벽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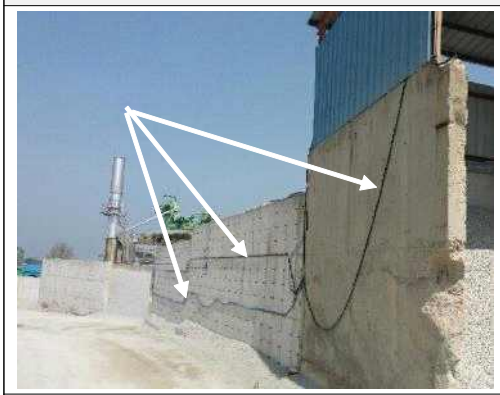 살수시설의 용수라인 모터 연결호스가 빠져 있어 살수가 되지 않고 있는 장면

[②수 질]

위반사례 1

위반사항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 신고사업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허가물질(폼알데하이드) 검출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벌 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배출시설 사용중지(입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로 신고 설치된 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이 설치허가 적용기준 이상 배출 - 측정결과 : 폼알데하이드 0.834mg/L (적용기준 0.5mg/L) ※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제41조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관련사진	

신고증명서 – 오염물질 배출항목

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오염물질배출항목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일	BOD ,COD ,SS ,노말헥산(광유) ,노말헥산(동식물) ,니켈 ,망간 ,바륨 ,수소이온농도 ,아연함유량 ,음이온계면활성제 ,철 ,총인 ,크롬 ,총질소 ,페놀 ,포스포레이트 ,총 대장균군 ,불소화합물

측정결과

염화비닐	불검출	검출유무	
아크릴로니트릴	불검출	검출유무	
브로모포름	불검출	검출유무	
색도	–	–	
생태독성	–	–	
페놀	불검출	검출유무	
폼알데히드	*0.834	검출유무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 이상 검출

위반사례 2

위반사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신규 오염물질 검출 ※ 허가사업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허가물질(폼알데하이드)과 신고하지 않은 신규물질(총대장균군, ABS, 안티몬, 철) 검출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과태료조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3항 제3호
과 태 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허가받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허가물질(폼알데하이드)과 신고하지 않은 신규물질(총대장균군, ABS, 안티몬, 철)이 측정결과 검출됨 - 측정결과 : 폼알데하이드 mg/L(적용기준 0.5mg/L) ※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제41조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관련사진	

신고증명서 – 오염물질 배출항목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pH, BOD, COD, SS, n-H(광), T-N, T-P, TU, 페놀류, 구리, 시안화합물,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 발생시설	pH, BOD, COD, SS, n-H(광), T-N, T-P, Tu, Cd, Pb, Zn, Cr6+, Cu, Mn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분무량 : 97.2㎥/시 x 1)	pH, BOD, COD, SS, n-H(광), T-N, T-P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분무량 : 240㎥/시 x 1)	pH, BOD, COD, SS, n-H(광), T-N, T-P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정수능력 : 720㎥/일 x 1)	pH, BOD, COD, SS, T-N, T-P

측정결과

총대장균군	4,900	검출유무	(단위 : 개/mL)
철	0.249	검출유무	
ABS	0.42	검출유무	
폼알데하이드	0.071	검출유무	
안티몬	0.026	검출유무	

위반사례 3

위반사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행정처분	개선명령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수질오염물질(BOD) 측정 - 측정결과 : BOD 154.8mg/L (배출허용기준 : 120mg/L이하) ※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제41조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관련사진	

신고증명서 – 오염물질 배출항목

12)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100㎥/일	PH, BOD, COD, SS, N-H(동식), T-N, T-P, 생태독성, 대장균, Cu함유량, 페놀류함유량, 1.1-디클로로에틸렌
82) 공통시설 (보일러시설) - 세정폐수 - 세관폐수	0.1㎥/일 14㎥/일.년	

측정결과

BOD	(*154.8)	120
COD	92.0	130
SS	4.6	120
T-N	3.890	60
T-P	0.054	8

위반사례 4

위반사항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벌 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배출시설 사용중지(입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명령)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함 - ○○○○는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 폐수배출시설인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을 ○○○○년 ○○월 경부터 설치하여 점검일 현재까지 운행차량의 차량소독 등을 실시하여 이때 폐수가 일 최대 약 4,000L가 발생(배출)됨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용적 242.88㎥, 12m×4.4m×4.6m)전경(앞,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에서 흘러 나온 폐수가 우수로에 유입되어 시료를 채취하는 장면

위반사례 5

위반사항	폐수 희석처리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벌 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는 산업용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 파유리 세척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스크린시설)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한 물인 공업용수를 희석하여 처리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수질오염방지시설(스크린 시설) 전경 공업용수를 투입하여 희석처리 하는 장면

위반사례 6

위반사항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과태료조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제3호
과 태 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시행규칙 제44조 [별표14]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위탁처리 할 폐수의 일일 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 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 눈금 등)을 부착하여야 함 ※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는 살충제 및 기타 농약제조업체로서, - 폐수 위탁 저장시설(20㎥×1기, 1.456㎥×2기, 4.95㎥×1기, 14.7㎥×1기)에 보관 중인 폐수의 양을 알아 볼 수 있는 계측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폐수 위탁 저장시설 (20㎥×1기) 폐수 위탁 저장시설(1.456㎥×2기) 폐수 위탁 저장시설(4.95㎥×1기) 폐수 위탁 저장시설(14.7㎥×1기)

위반사례 7

위반사항	폐수 무단방류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벌 칙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1차)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해서는 안됨 - ○○○○는 세차업을 하는 업체로, - 집수조 내부에 수중펌프와 자바라호스를 연결하여 우수로로 무단방류한 사실을 확인함 ※ 방류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관련사진	 폐수 집수조 집수조 내부에 수중펌프와 자바라호스 연결 우수로에 무단방류 우수로에 방류되는 시료 채취 장면

위반사례 8

위반사항	운영일지 미작성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
과태료조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2항 제2호
과 태 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행정처분	경고(1차)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함 - ○○○○은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로,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년 ○○월 ○○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미작성(기록, 보존 미실시)한 사실을 확인함
참고사항	□ 운영일지의 기록 및 보존 **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 **시행령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폐수무방류시설은 3년간 보존)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보존 가능

[③폐기물]

위반사례 1

위반사항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금지 위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벌 칙	고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됨 - ○○○○는 구조용 금속판제조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업체로, - 난방용 화목보일러(노내용적,1.33㎥)을 이용하여 압출성형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PE, PP찌꺼기가 묻어있는 철망)을 소각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폐기물을 소각하는 장면 굴뚝으로 매연이 나가는 장면 보일러 내부에서 철망에 묻은 폐기물은 타고 철망만 남아있는 장면

위반사례 2

위반사항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주변 환경 오염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벌 칙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서는 안됨 - ○○○○는 금속제품 제조업체로, - 폐수처리오니 보관 압롤박스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우수로로 유출시킨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압롤박스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우수로로 유입되는 장면

위반사례 3

위반사항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② - 혼합 보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과태료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과 태 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500만원) →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 5. 27. 시행]
행정처분	-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 - ○○○○는 기타 금속 처리업체로, - 지정폐기물(폐유·기름장갑·기름걸레)과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약 5ton을 혼합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혼합보관 되어 있는 폐기물
참고사항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법 제13조)**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법 제13조의 2)**

현재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한 경우 →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킴 →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5.27. 시행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한 경우 →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례 4

위반사항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③ - 보관장소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과태료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과 태 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200만원) →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 5. 27. 시행]
행정처분	-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함 - ○○○○는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비산재 및 바닥재를 지붕과 벽면이 없는 장소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지붕과 벽면이 없는 장소에 보관중인 사업장일반폐기물(비산재 및 바닥재)

위반사례 5

위반사항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폐기물 부적정 보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벌칙조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벌 칙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함 - ○○○○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이후, 폐비닐을 재활용해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수집 운반해온 폐페인트통을 허가 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부지에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
관련사진	 허가받은 보관시설 이외에 장소에 보관중인 폐기물

* 본 교재 내용 중 적발사진은 적발업체에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무단복제나 외부유출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된 내용은 발행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자세한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의 해당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